

보 상 계 획 재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비고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울리, 영동읍 설계리 일원 (63,888㎡)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비고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토지	영동읍 설계리	산9-36, 산9-37, 산9-38, 산9-41, 산9-42, 산9-43, 100-2, 산12-29, 산11-1, 산11-4, 산10-1, 산10-2, 885-1, 885-2, 885-3, 827-35, 827-37, 산11-3, 96-5, 830-1, 830-3, 산12-27, 99	
	용산면 울리	853-1, 881-41, 814-3, 802-2, 758-1, 산43-14, 산41-18, 산41-19, 산41-4 산40-20, 산40-24, 산40-16, 산40-18, 930-7, 산40-19, 산41-20, 930-5, 854-2, 924-5, 854-5, 854-6, 산40-23, 산40-14, 산43-11, 815-10, 900-1, 산43-4, 881-38, 898-2, 산65-2, 산63-7, 산63-3, 산63-8, 615-3, 878-1, 640-4, 640-6, 산53-9, 산47-4, 682-4, 675-11, 산64-11, 881-4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단,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본인의 소유 토지 및 물건에 한하여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열람기간 : 2024.11.19.(화) ~ 2024.12.03.(화) (금번 공고기간)
2024.06.05.(수) ~ 2024.06.19.(수) (종전 공고기간)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TEL: 042-485-1152)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한국부동산원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조서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불법점용 등에 의거 보상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 보상계획의 일정은 사업 여건 및 민원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금회 보상계획 공고한 토지 중 현실이용상황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 과거에 공익사업 시행여부, 보상금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다른 토지 대비 보상시기가 늦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거 보상을 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도 과거 보상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지장물(건물 기타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계고 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라.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9.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